

KBIZ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수 신 각조합원업체 대표

(경유)

참 조

제 목 신용보증기금의 RG(선수금 환급보증) 특례보증 개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선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중소조선소 RG(선수금 환급보증) 특례보증과 관련,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처리 방법을 개정하여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이 별첨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
가. 최고보증한도 확대 [RG 특례보증한도] - 150억원 [조선기자재 특례보증한도] - 70억원	⇒	가. 최고보증한도 확대 [RG 특례보증한도] - 200억원 [조선기자재 특례보증한도] - 100억원
나. RG특례보증 보증비율 상향 - 75%	⇒	나. RG특례보증 보증비율 상향 - 85%
다. 운용시한 변경 - 21년 12월말까지 한시적 운용	⇒	다. 운용시한 변경 - 총 지원한도 소진시까지 운용

첨부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879호(2021.12.07.) 공문서 사본 1 부-끝-

(※ 본 조합 홈페이지(www.kosic.or.kr) 공지사항 참조)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 성 태



수신처 :

차장 신정철

부장 임재민

부장 한기원

전결(2021/ 12 /13)

전무이사 배철남

협조자

시행 업무부- 100 호 (2021. 12. 13.) 접수

우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03, 4층(조선회관) / <http://www.kosic.or.kr>

전화 (02)587-3121 전송 (02)588-3671 / crinthan@naver.com / 공개

KBIZ 중소기업중앙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용보증기금의 RG 및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개정에 따른 알림(조선산업위원회)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선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중소조선소 RG특례보증 및 조선기자재 업계 특례보증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처리방법을 개정하여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 중앙회, 금융위원회(‘21.3월) 및 보증기관(‘21.9월) 건의

3. 개정된 동 제도를 조합원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2021.12.02〉

가. 최고보증한도 확대

현행	개정(안)
【RG특례보증한도】 ▪ <u>150억원</u> 【조선기자재 특례보증한도】 ▪ <u>70억원</u>	【RG특례보증】 ▪ <u>200억원</u> 【조선기자재 특례보증한도】 ▪ <u>100억원</u>

나. RG특례보증 보증비율 상향

▪ <u>75%</u>	▪ <u>85%</u>
--------------	--------------

다. 운용시한 변경

▪ <u>21년 12월말까지 한시적 운용</u>	▪ <u>총 지원한도 소진 시까지 운용</u>
----------------------------	---------------------------



- 붙임 1.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및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업무처리 방법」 개정 1부.
2. 주요내용_RG특례보증 및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_(21.12.02.) 1부.
3.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후 전문(11차) 1부.
4.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후 전문(5차)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장



수신자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부산장림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

과장 임경민

부장 전결 12/07
김태환

수신담당

예산통제

협조자

시행 국제통상부-879 (2021.12.07)

접수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3층 / www.kbiz.or.kr

전화 02-2124-3163 전송 02-3775-1981 / lkm1002@kbiz.or.kr / 부분공개



수신 각 본부점장

(경유)

제목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및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및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붙임 : 1. 주요내용 1부.

2.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전 전문 1부.
3.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후 전문 1부.
4.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전 전문 1부.
5.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 후 전문 1부. 끝.

이사장

선임차장	기안 11/29 최종오	수석부부장	결재 11/29 이종구	본부장	결재 11/29 유광희	부문장	결재 11/30 김충배
전무이사	결재 11/30 김동완	이사장	결재 12/01 윤대희				
협조자(합의) 실장	최한중	본부장	이주영				

시행 보증-3644 (2021.12.02)

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12층 (신서동)

/ <http://www.kodit.co.kr>

전화번호 053-430-4345

팩스번호 0505-071-4600

/ lawbf515@kodit.co.kr

/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

I 개정 사유

- 정부의「세계 일등 조선 강국 실현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 발표('21.9.9)에 따른 후속조치
 -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업체 수주활동 촉진을 위해 보증지원 한도 확대 등을 통한 **RG발급 및 제작금융 관련 특례보증 활성화** 추진
 - *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이하 RG 특례보증) 및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하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운용 지침 변경 시달('21.11.22.)

II 주요 개정 내용

1. 최고보증한도 확대

- 'RG특례보증'의 최고보증한도(150억원 → 200억원) 및 '조선기자재 특례보증'의 최고보증한도(70억원 → 100억원)를 확대
- 'RG특례보증'과 '조선기자재 특례보증'을 **합산한 최고보증한도는 200억원으로 운용**

【RG특례보증: 최고보증한도】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최고보증한도】

현 행
【RG특례보증】 ■ 최고보증한도 운용 : <u>150억원</u> - 조선기자재 특례보증을 합하여 <u>150억원</u> 한도로 운용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 최고보증한도 운용 : <u>70억원</u> - RG특례보증을 합하여 <u>150억원</u> 한도로 운용



개 정(안)
【RG특례보증】 ■ 최고보증한도 운용 : <u>200억원</u> - 조선기자재 특례보증을 합하여 <u>200억원</u> 한도로 운용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 최고보증한도 운용 : <u>100억원</u> - RG특례보증을 합하여 <u>200억원</u> 한도로 운용

- 'RG특례보증', '조선기자재 특례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의 최고보증
한도 확대에 맞춰, **같은 기업의 보증종류별 최고보증한도 변경**

【RG특례보증: 최고보증한도 운용】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최고보증한도 운용】

현 행
【보증별 최고보증한도】 ① 신보·기보 일반보증 + 재단보증 (RG 및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제외) : 70억원 ② 신보·기보 투자금액 : 30억원 ③ 신보·기보 유동화 편입금액 : <u>150억원</u> ④ RG 및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 <u>150억원</u> 【최고보증한도 운용】 ■ ① + ② = 100억원 ■ ① + ② + ③ = 150억원 ■ ① + ② + ③ + ④ = 150억원



개 정(안)
【보증별 최고보증한도】 ① 신보·기보 일반보증 + 재단보증 (RG 및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제외) : 70억원 ② 신보·기보 투자금액 : 30억원 ③ 신보·기보 유동화 편입금액 : <u>200억원</u> ④ RG 및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 <u>200억원</u> 【최고보증한도 운용】 ■ ① + ② = 100억원 ■ ① + ② + ③ + ④ = 200억원

- 'RG특례보증'과 '조선기자재 특례보증'의 최고보증한도 확대에 따라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를 조정

【RG특례보증: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현 행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 KRS-C, KRS-S (업력 3년 초과)	
보증심사등급	한도
K1등급 ~ K5등급	150억원
K6등급 ~ K8등급	100억원
K9등급 ~ K13등급	70억원
■ KRS-S (업력 3년 이하)	
보증심사등급	한도
K1등급 ~ K13등급	70억원



개 정(안)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 KRS-C, KRS-S (업력 3년 초과)	
보증심사등급	한도
K1등급 ~ K5등급	200억원
K6등급 ~ K8등급	150억원
K9등급 ~ K13등급	120억원
■ KRS-S (업력 3년 이하)	
보증심사등급	한도
K1등급 ~ K13등급	120억원

2. RG특례보증 보증비율 상향

- ☐ RG특례보증 보증비율을 현행 75%에서 85%로 10%p 상향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RG발급을 유도

【RG특례보증: 보증비율】

현 행	개 정(안)
【보증비율】 ■ <u>75%</u>	【보증비율】 ■ <u>85%</u>

3. 운용시한 변경

- ☐ 안정적인 특례보증 운용을 위해 운용시한을 현행 2021.12.31.에서
총 지원한도 소진 시까지로 변경

【RG특례보증: 운용시한】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운용시한】

현 행	개 정(안)
【운용시한】 ■ <u>202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u>	【운용시한】 ■ <u>총 지원한도 소진 시까지 운용</u>

Ⅲ 그 밖의 사항

- ☐ 시행일 : 2021. 12. 02.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제 정 : 2017. 9.11. 개정(6) : 2019. 6.28.
개정(1) : 2017.10.18. 개정(7) : 2019. 7.22.
개정(2) : 2017.11.27. 개정(8) : 2019.12.17.
개정(3) : 2018. 4.27. 개정(9) : 2020.12.29.
개정(4) : 2018. 9.13. 개정(10) : 2021. 6.30.
개정(5) : 2018.12. 7. 개정(11) : 2021.12.02.

I. 제정 배경

□ 금융위의「중소조선사 RG 발급 지원을 위한 업무지침」후속조치

- 조선·해운업 불황 및 금융권의 RG 발급 기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

II. 도입 근거

- 「신용보증규정」제49조, 「보증취급절차 운용요령」제32조제2항
- 중소기업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17.8.24.)
-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금융위, '19.6.27.)
- 세계 일등 조선 강국 실현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 (관계부처 합동, '21.9.9.)

【금융위원회 운용지침】

- 중소기업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운용지침(금융위, '17.9.5.)
- 중소기업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운용지침 변경(금융위, '17.11.7.)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운용지침(금융위, '18.11.30.)
- 중소기업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운용지침 변경(금융위, '19.7.4.)
- 중소기업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운용지침 변경(금융위, '21.11.22.)

III. 적용원칙

- 본 특례보증 운용에 관하여 이 업무처리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업무처리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용보증 업무 관련 제규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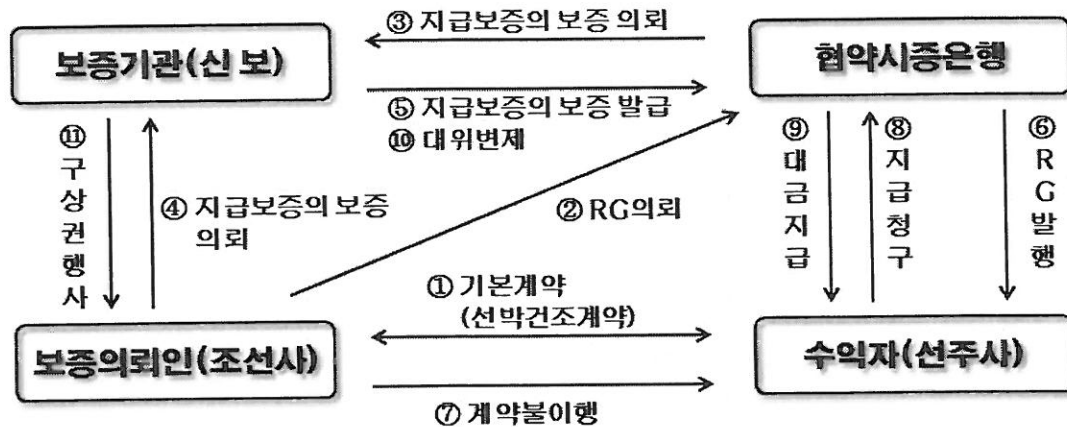
IV. 보증 운용 개요

□ 선박진조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

* Refund Guarantee

- (구조)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에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신보가 보증 지원
- (출연) 재정(200억원), 기은·산은·수협(50억원) 등 총 250억원
- (보증운용) 보증비율 85%, 운용배수 3배 적용

<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한 보증 구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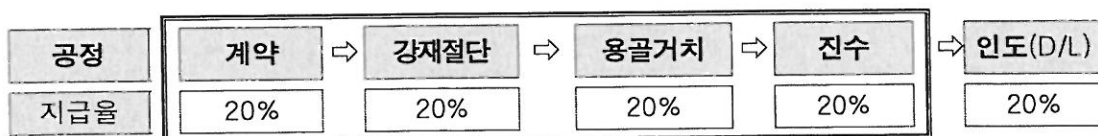


【RG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 운용 구조】

구 분	내 용	비 고
보증비율	85%	'17년은 민간출연 재원 활용
운용배수	3배 (총 250억원 소요)	
재원조달	정부출연 200억원, 민간출연 50억원	민간출연은 기은(20), 산은(20), 수협(10)

【참고: 선박건조 선수금환급보증(RG : Refund Guarantee)】

- 조선사(Ship Builder)가 선주(Buyer)로부터 선박건조 공정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영수하고, 관련 선박의 건조 및 인도(Delivery) 미이행 시 보증서(RG) 발급은행이 기수령한 선수금 및 이자의 대 지급을 약속하는 보증
 - 선주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선수금을 수령한 조선사의 건조 의무 불이행 위험을 회피하고자 선박건조계약 시 요구
 - 발주사(선주)는 RG를 기초로 선수금을 조선사에게 지급
- RG 대상은 선박을 인도받기 전까지 선결제한 대금
 - 장기적인 건조기간으로 인하여 선가에 대한 결제는 주요 공사단계별로 진행되며, 가장 일반적인 결제방식인 Standard의 경우 20%씩 5번에 걸쳐 결제
 - 진수 시 20%까지 총 80%가 선박 인도 전에 선주측이 조선사에 지불하는 선수금의 대상이 되며, 나머지 20%는 시운전이 완료되고 인도 시 결제



※ Heavy-tail 방식 : 선수금 비중(통상 40%)이 낮고 인도 후 잔금 지급비율이 표준비율보다 높은 방식

V. 특례보증 운용 방법

1. 보증대상 및 취급조직

□ 대상기업

-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조선업* 영위 중소기업

* 예시) C31111 ~ C31114, C25922, C29169, C29172, C28123, C34019, C31120, C2511, C27211, C24132, M72129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별지 1)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검토표 참조

- 「신용보증규정」제8조의 보증금지대상 및 제9조의 보증제한대상(워크아웃기업 포함)
- 최종 미래성장성등급 K14 등급 이하
- 최종 결산일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
- 최근 3개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시현
- 최근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 총 수주잔액이 당기(또는 최근 1년 이내) 매출액 대비 5배 초과

□ 대상채무

- 금융회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이행으로 인해 대상기업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국내기업 및 기관이 발주하는 국적선 신조 시 선수금에 한함

- 다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선수금 환급보증은 제외

□ 보증상대처

- 금융회사

2.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최고보증한도) 「신용보증규정」부칙(14) 제2조 및 제3조의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잠정조치에 의함

- 「신용보증규정」제12조의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보증한도 대상보증에서 제외

-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의 최고보증한도 200억원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합하여 200억원 한도로 운용

- 「신용보증규정」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한 한도를 모두 충족한 범위에서 운용

- 1)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과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제외한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금액"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70억원 이내
- 2) 위 1)의 보증금액과 신보와 기보의 투자금액을 합하여 100억원 이내
- 3) 위 2)와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신보와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하여 200억원 이내

구분	보증별 최고보증한도	한도	최고보증한도 운용
①	■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금액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 단 ④를 제외한 금액	70억원	① + ② = 100억원 ① + ② + ③ + ④ = 200억원
②	■ 신보와 기보의 투자금액	30억원	
③	■ 신보와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	200억원	
④	■ 본 특례보증 ㉠ 중소기업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200억원)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특례보증(100억원)	200억원	
<예시1>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금액 5억원, 신보와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기초자산 편입금액 5억원, 조선기자재 기업 특례보증 40억원인 경우 RG 특례보증 지원한도 : 150억원 <예시2>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금액 30억원, 신보와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기초자산 편입금액 10억원, 조선기자재 기업 특례보증 70억원인 경우 RG 특례보증 지원한도 : 90억원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신용보증규정」부칙(14) 제3조의 중소기업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잠정조치에 의함

-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과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신용보증규정」제13조제3항의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보증금액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를 차등 운용

■ KRS-C 및 KRS-S(업력 3년 초과)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급

미래성장성등급	최고보증한도
1. K1등급 ~ K5등급	200억원
2. K6등급 ~ K8등급	150억원
3. K9등급 ~ K13등급	120억원

■ KRS-S(업력 3년 이하)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급

미래성장성등급	최고보증한도
■ K1등급 ~ K13등급	120억원

- (선박당 보증한도) 선박건조 계약금액의 80% 이내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보증심사 운용요령」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한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산출

- 추정매출액의 1/2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 당기 매출액의 1/2

3. 보증심사방법 등

□ 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표준심사** 적용
 - 심사기준 보증금액*이 5억원 이하(미래성장기업군 I 군) 또는 3억원 이하(미래성장기업군 II ~ IV군)인 경우에는 일반심사(비창업용/창업용) 적용 가능
 - * 심사요령 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리스크 관리 및 업계 특성 반영 등을 위해 본 특례보증에 한하여 심사항목 일부 조정

구 분	일반보증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표준심사 체크리스트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600%) 초과 ■ <추 가>	■ 부채비율 300% 초과 (다만, 선수금은 부채에서 제외) ■ 유사선박 단독 건조 이력 보유

※ (별지 2) 표준심사 체크리스트 (비창업용/창업용 : RG 특례보증) 참조

□ 전결권

- 「보증심사 운용요령」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증방법 및 거래방법

- (보증방법) 근보증 또는 개별보증
- (거래방법) 일반거래 [한도거래 불가]
- (표시통화) 원화표시 보증

□ 보증기한

- (근보증)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개별보증) 주채무 기한 이내
 - RG 여신기간이 선박건조계약서상 선박인도일에 일정일을 가산한 기간을 만기로 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경우
 - * 다만, 신용보증약관상 최초 실행된 지급보증에 한해 보증책임을 부담. 보증책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증특약을 부여

□ 보증료율

- 「보증료 등 운용기준」에 따라 산출된 미래성장성등급별 보증료율에서 **0.5%p 차감** 운용
 - 근보증인 경우 수납기간은 보증기한에 90일을 가산

□ 보증비용

○ 「부분보증 운용기준」에 불구하고, 채권은행의 지급보증예정금액*의 85%

* 각 회차별 선수금과 선수금 수령일 익일로부터 선박 인도예정일까지의 예상 이자를 합산한 금액

- 다만, 채권은행 요청 시 85% 이하로 운용 가능

□ 제출자료

○ 「조사자료 등 운용기준」에 따르되,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

- 선박건조(수주)계약서 사본, 과거 선박건조 이력 자료(계약서 사본 등)
- 선박건조 진행계획 및 선수금 입금 스케줄표
- 총 수주잔액(계약서 사본 등 첨부) 및 최대 RG 예상잔액표

※ (별지 3) 선수금환급보증(RG)의 보증 신청서 및 선박건조 진행계획 등 참조

□ 보증특약

○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필수적으로 부여

구 분	특 약 문 언
보증 책임 부담	■ 지급보증의 대상채무가 피보증기업과 발주사(△△ 주식회사)와의 00년 00월 00일자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선박건조 선수금환급보증(R/G)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전액 해지 조건	■ 피보증기업이 해당 선박을 건조 및 완성하여 선주인 발주사(△△ 주식회사)에 최종 인도하고 발주사로부터 당해 R/G(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반환받은 즉시 본 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합니다.
선수금관리 계좌 운용	■ 피보증기업 명의로 해당선박과 관련된 선수금관리계좌(E/A)*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계좌에 대하여 질권 설정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 피보증기업이 해당 선박에 대하여 귀행을 피보험자로 하는 선박건조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동 보험계약서상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하여야 합니다. (선박 공정단계에 따라 보험 가입 시기는 조정 가능) ※ 다만, 특정건조단계에 대한 RG(예 : 강재절단 단계에 대한 RG 발급 요청) 발급 시 등 특약사항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약 부여 생략 가능

* '선수금관리계좌(Escrow Account, 이하'E/A'라 한다)'란 조선사가 선주로부터 공정 단계별로 지급 받는 선수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선수금 유용방지 등을 위하여 개설된 결제 업무용 계좌를 말함

** '선박건조보험(Builder's Risk Insurance)'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 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따르는 제반 육상위험 및 해상위험을 담보

- 개별보증으로 취급하는 경우 필요 시 다음과 같은 특약 부여

구 분	특 약 문 언
보증책임 범위 확대	- 신용보증약관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는 지급보증이 분할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분할지급보증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 실행되더라도 최초의 지급보증과 합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가. 최초의 지급보증 관련 서류에 분할지급보증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나. 최초의 지급보증이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될 것 다. 분할지급보증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지급보증의 기한과 같은 것

- 필요 시 공정단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 부여

구 분	특 약 문 언
담보 취득	선박건조용 원자재 및 해당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담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4. 조사·심사 시 착안사항 등

□ 선박건조계약 및 진행상황, 조선사의 건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 지원 여부 판단

- 주요 착안 사항이 보증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심사의견에 검토 내용 기재

< 주요 착안 사항 >

검토 사항	내 용
선박 기본사항	선박의 규모, 계약금액, 성능요구사항, 인도일자 등
계약서 유형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표준계약서와 과거 유사 선박건조 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 지 검토
선수금 지급조건	-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지급 방식* 및 스케줄 * 표준계약방식, Heavy-tail 방식, Heavy-top 방식 - 총 선수금 규모와 총 보증금액(RG발행금액)* 산정 * 선수금 환급 시 이자율을 확인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
선수금환급 청구사유	- 조선사 파산 등 선수금 환급 청구사유(RG call) 및 불리한 조항 여부 * 사유 발생 시 발주사는 은행에게 既 지급된 선수금의 환급을 요청하며, 은행은 통상 서류 심사를 통해 발주사의 제출 서류가 사유와 일치하면 지급(추상성)
중재(ARBITRATION) 항목	- 계약서상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중재기간 중에는 RG 발행은행의 선수금환급의무가 유예되는 효력 * 조선사와 선주사이의 분쟁 발생 시 제3의 중재기관을 지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조항
기 타	- 선박건조계약 취소 또는 해지 요건 - 조선사의 채무불이행(Default) 조항 등
조선사의 건조능력 등	- 조선사의 과거 유사선박 건조 이력, 수주 현황, 진행 중인 여타 건조 상황 - 발주사의 신용상태 및 재무상황

※ 필요 시 위임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의뢰

【참고: 선수금 환급청구(RG call) 사유 (예시)】

- ① 인도의 지연
- ② 계약의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건조된 선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③ 도산 등과 같은 건조자의 재정상의 문제
- ④ 인도 전에 선박이 멸실된 경우
- ⑤ 기타 다른 불이행이 있는 경우

□ 보증 취급 시 유의사항

- 본 보증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 또는 갱신보증 취급 불가
 - 다만, 선박 인도기한이 보증기한 보다 장기이거나, 인도기한 내 선박건조가 불가능 할 경우(인도일 지연, 설계변경 등) 기한연장 또는 갱신보증 취급 가능
- 기보증 포함 증액보증 취급 불가

□ 사후관리

- 피보증기업이 제시한 선박건조 진행계획을 바탕으로 매 공정 진행 후 피보증기업으로부터 **공정단계 확인서*** 및 **선박의 실물사진 수집** (필요 시 조선사 또는 건조현장 직접 방문)
 - * 발주사(선주사)의 에이전시가 공정에 대한 진행내용을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시함으로써 선수금 입금의 원천이 되는 보고서(현재 국내는 '한국선급'에서 발급)
- 공정단계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특별사후관리기록표*** 작성
 - 최초 보증서 발급일이 속한 월의 다음 분기부터 **매 분기별로** 특별관리기업에 준해서 **점검**하고 **점검** 내용을 의견란에 기재
 - * (전산경로) 보증/관리 - 보증고객 - 부실징후알람/사후관리 - 사후관리기록표

VI. 그 밖의 사항

□ 보증취급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조치

- 본 보증 취급과 관련하여 취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급자의 업무상 책임을 면함
- 본 특례보증 지원 금액은 '신용보증전진도' 평가대상, 장기고액보증 감축 및 일부해지 대상에서 제외
- 본 특례보증 지원 건은 성과평가 시 다음 항목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규보증공급 중 보증포트폴리오 개선노력도, 보증잔액 관리, 기업가치평가활성화 노력도*, 신규보증 질적개선 노력도, 리스크인수율

* 기업가치평가 미적용 기업의 본 특례보증 실행금액 및 업체수(분자, 분모 모두 제외)

□ 전산관리 등

- 보증신청 내용 입력 시 자금특성 코드란에「00 은행 RG 특례보증」을 선택
- 채권은행은 전자보증신청서에 “본 보증은 중소기업사 RG 특례보증 추천건임”이라고 기재하여 추천

□ 세부 운용사항의 위임

- 본 보증 운용과 관련하여 보증한도, 심사방법, 전결권 이외의 세부운용 사항에 대한 신설 및 변경은 신용사업부문 담당임원 전결로 처리

□ 총 지원한도 : 750억원

-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출연금(50억원)을 재원으로 150억원 지원
 - 3개 은행을 보증상대처로 운용하고 출연금액에도 불구하고 은행별 지원한도는 제한없이 운용
- 정부 출연금(200억원)을 재원으로 600억원 지원
 - 은행 출연금 소진 후 또는 보증지원액이 지원한도(150억원)에 도달한 후, 보증서 발급 개시

□ 시행일

- 제정 : '17. 9. 11.
- 최종(제11차) 개정 : '21. 12. 02.

□ 운용시한

- 총 지원한도 소진 시까지
 - 다만, 본건 특례보증에 대한 신보의 보증채무이행으로 보증재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소진시점에서 운용 중단*
 - * 은행출연금 50억원 소진 시 은행출연금에 의한 보증지원(150억원) 중단,
정부재정 200억원 소진 시 정부재정에 의한 보증지원(600억원) 중단

- 별 지 : 1. 중소기업사 RG 특례보증 검토표
2. 표준심사 체크리스트(비창업용/창업용 : RG 특례보증)
3. 선수금환급보증(RG)의 보증 신청서 및 선박건조 진행계획 등 개요 (양식)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검토

검 토 항 목	저촉여부
■ 「신용보증규정」제8조의 보증금지대상 및 제9조의 보증제한대상 (워크아웃기업 포함)	(여, 부)
■ 최종 미래성장성등급 K14 등급 이하	(여, 부)
■ 최종 결산일 기준 자기자본 전액 잠식 상태	(여, 부)
■ 최근 3개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시현	(여, 부)
■ 최근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여, 부)
■ 총 수주잔액이 당기(또는 최근 1년 이내) 매출액 대비 5배 초과	(여, 부)

※ 상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여” 인 경우 보증 취급 불가

표준심사 체크리스트 (비창업용 : RG 특례보증)

구분	심사항목	내용	저촉여부	저촉시
신용도취약	1. 신용평가등급이 'KR15'등급(기타등급은 제외) 이하	평가등급	(여, 부)	·필수의견 기재 ·보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전결권상향 (영업본부장 이상)
	2. 심사기준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CB등급이 CBR-6 이하	CB등급	(여, 부)	
	3.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고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의 적자가 증가한 기업		(여, 부)	
	4. 신용평가등급이 KR12-KR14등급이고, 현금흐름표 종합 판정등급이 'CR-5'이하	현금흐름 등급	(여, 부)	
	5. 부채비율 상한선(300%) 초과 (단, 부채에서 선수금 제외 가능)	부채비율 상한선 300%	(여, 부)	
	6. 최근 2개년 연속 EBITDA이자보상배율 1미만	EBITDA 이자보상배율	(여, 부)	
신용도	7.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주2)}		(여, 부)	·필수의견 기재 ·보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8. 최근 1년 이내에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해 다음 사실 발생 ^{주3)} ① 당좌부도 발생 ② 신보의 '신용관리등급' 보유 ③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④ 신용보증부실(기보, 재단, SOC기업, 부실유보기업 포함)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9. 심사기준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주4)}		(여, 부)	
	10. 심사기준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CB)연체정보 보유		(여, 부)	
	11. 심사기준일 현재 신청기업이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체납정보 보유		(여, 부)	
	대표자	12.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변경		
차입금 상환 능력	13.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율이 70% 초과	총차입금 매출액	(여, 부) (여, 부)	
	14. 당기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차입금 비율이 50% 초과	운전자금 매출액	(여, 부)	
재무 건전성	15. 자기자본 전액잠식	자기자본	(여, 부)	
	16.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이 25%이상 감소	전기 당기	(여, 부)	
	17.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이 400% 초과		(여, 부)	
미래 성장성	18. 미래성장기업군이 Ⅲ군 이하로서 미래경영평점 ^{주5)} 또는 혁신(기술)역량평점이 30점 이하 여부	미래경영 평점 혁신(기술) 역량평점	(여, 부)	
기타	19. 유사선박 단독 건조 이력 보유		(여, 부)	
유의사항				
주1) 심사항목 중「보증심사 운용요령」및「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예외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영업점장 판단사항으로 지정한 경우의 저촉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증승인은 영업점장이 전결함 주2) 심사기준일 현재 '연체중'이거나「보증심사 운용요령」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빈번한 연체'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제한기업으로 분류 주3) 심사기준일 현재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에 대해 권리침해 중인 경우, 보증부실기업(부실유보기업 포함)인 경우에는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 주4) 신청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 주5) 미래경영평점은 신용평가 재무점수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				

표준심사 체크리스트 (창업용 : RG 특례보증)

구분	심사항목	내용	저축여부	저축시
신용도 취약	1. 신용평가등급이 'KR15'등급(기타등급은 제외) 이하	평가등급	(여, 부)	·필수의견 기재 ·보증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전결권상향 (영업본부장 이상)
	2. 심사기준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CB등급이 CBR-6 이하	CB등급	(여, 부)	
	3. 신용평가등급이 KR12-KR14등급이고, 현금흐름표 종합 판정등급이 'CR-5'이하 ^{주6)}	현금흐름 등급	(여, 부)	
	4. 최근 2개년 연속 EBITDA이자보상배율 1미만 ^{주5)}	EBITDA 이자보상배율	(여, 부)	
신용도	5.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주2)}		(여, 부)	·필수의견 기재 ·보증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6. 최근 1년 이내에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해 다음 사실 발생 ^{주3)} ① 당좌부도 발생 ② 신보의 '신용관리등급' 보유 ③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④ 신용보증부실(기보, 재단, SOC기금, 부실유보기업 포함)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7. 심사기준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주4)}		(여, 부)	
	8. 심사기준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CB)연체정보 보유		(여, 부)	
	9. 심사기준일 현재 신청기업이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체납정보 보유		(여, 부)	
대표자	10.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변경		(여, 부)	
	11. 대표자(실제경영자)의 동업계 종사기간이 1년 미만	종사기간	(여, 부)	
차입금 상환 능력	12. 미래상환능력 평가등급 E등급 이하 ^{주5)}	평가등급	(여, 부)	
	13. 총차입금이 당기 매출액 초과 ^{주6), 주7)}	총차입금 매출액	(여, 부)	
재무 건전성	14. 자기자본 전액잠식 ^{주6)}	자기자본	(여, 부)	
	15.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고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의 적자가 증가한 기업 ^{주7)}		(여, 부)	
미래 성장성	16. 미래성장기업군이 III군 이하로서 미래경영평점 ^{주8)} 또는 혁신(기술)역량평점이 30점 이하 여부	미래경영평점 혁신역량평점	(여, 부)	
기타	17. 부채비율 상한선(300%) 초과(단, 부채에서 선수금 제외 가능)	부채비율 상한선 300%	(여, 부)	
	18. 유사선박 단독 건조 이력 보유		(여, 부)	

유의사항

- 주1) 심사항목 중「보증심사 운용요령」및「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예외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영업점장 판단사항으로 지정한 경우의 저촉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증승인은 영업점장이 전결함
- 주2) 심사기준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보증심사 운용요령'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빈번한 연체'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제한기업으로 분류
- 주3) 심사기준일 현재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에 대해 권리침해 중인 경우, 보증부실기업(부실유보기업 포함)인 경우에는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
- 주4) 신청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
- 주5) 회계기간 360일 이상 재무제표를 2기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제12호를, 2기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
- 주6)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는 회계기간 360일 이상 재무제표를 2기 이상 보유하고 신용평가의 재무점수가 50점 이하인 경우에 적용(신용평가 재무점수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기간 360일 이상 재무제표를 2기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주7) 본건이 전액해지 시설자금보증인 경우에 적용 제외
- 주8) 미래경영평점은 신용평가 재무점수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

선수금환급보증(RG)의 보증 신청서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귀중

▣ 보증신청내용

선박건조 계획명			
발주사(선주사)			
선수금환급보증 (RG)금액	총 ₩ (선박당 ₩) - 상기 금액을 한도로 선수금환급금액 및 각 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선박인도완료일 ^{주)} 까지 %에 해당하는 이자		
보증기간	예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호선별 선박인도완료일까지		
보증형식	원화표시 지급보증		
RG 발급예정 은행	00 은행 00 지점		
담보제공(예정) 내용	1. 양도담보 2. 선박건조보험 3. 기타		
작성자	소속:	직.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인도예정일:

- * 첨부: 1. 선박건조 진행계획 및 발주사(선주사) 개요
 2. 선박건조계약서 사본 및 과거 선박건조 이력 자료(계약서 사본 등)
 3. 보증서 문안 (보증은행 요구 문안)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첨부】

1. 선박건조 진행계획

수주 내용						
발주사(선주사)						
계약체결일	. . . (발효일: 선박계약체결 후 즉시)					
건조 목적물	선종	선형	규모 (GT)	호선 (Hull NO.)	계약금액	
					₩ (₩ /척)	
공정 예정	호선		착공(S/C)	용골(K/L)	진수(L/C)	인도(D/L)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선수금 입금 스케줄 (척당)	차수	비율	금액(₩)	입금(예정)시기		비고
	1	%				
	2	%				
	3	%				
	4	%				
	계	100%				-
선가(船價)의 적정성	시황 (동종동급)	발표기관		최근 매매사례		
		가격				
총 수주잔액				최대 RG 예상잔액		

2. 발주사(선주사) 개요

회사명			
회사개요			
선박보유현황			
거래관계			
재무현황 (2016년)	■ 총자산 : ■ 매출액 :	■ 자본금 : ■ 순이익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업무처리방법

제 정 : 2018.12. 7.
개정(1) : 2019. 6.28.
개정(2) : 2019. 7.22.
개정(3) : 2019. 12.17.
개정(4) : 2020. 6. 4.
개정(5) : 2021.12.02.

I. 제정 배경

☐ 금융위의「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운용지침」후속조치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

II. 도입 근거

☐ 「신용보증규정」제49조

-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18.10.23.)
-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관계부처 합동, '18.11.22.)
- ☐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금융위, '19.6.27.)
- ☐ 세계 일등 조선 강국 실현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 (관계부처 합동, '21.9.9.)

【금융위원회 운용지침】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운용지침(금융위, '18.11.30.)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운용지침 변경(금융위, '19.7.4.)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운용지침 변경(금융위, '21.11.22.)

III. 적용원칙

- ☐ 본 특례보증 운용에 관하여 이 업무처리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업무처리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용보증 업무 관련 제규정에 따름

IV. 보증 운용 개요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 (구조) 정부 및 조선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보가 조선기자재 기업의 제작금융에 보증 지원
- (출연) 재정(100억원), 조선사(40억원) 등 총 140억원
- (보증운용) 보증비율 90%, 운용배수 5배 적용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운용 구조】

구 분	내 용	비 고
보증규모	총 700억원	
보증비율	90%	
운용배수	5배	
재원조달	정부출연 100억원, 민간출연 40억원	민간출연은 대형조선사 협약출연

V. 보증 운용 방법

1. 보증대상

□ 대상기업

- 조선사*, 신보 및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조선기자재 제작 납품계약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 조선사가 추천하는 기업은 신용보증부에서 별도 통보

** 납품계약서, 용역공급계약서, 발주서 등을 통해 실제 납품할 상대처, 제품의 상세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납품계약 등의 확인

- 선박 제작과 관련한 납품계약 내용 등 진위확인에 유의하며, 제작완료 후 판매대금 회수를 통해 보증 정상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증지원
- 보증심사 시 보증신청기업(공급자)의 영업활동 내역을 확인하여 공급자(기업) 및 구매자(기업)의 자금유통적 성격의 납품거래 여부에 유의하며,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진정한 상거래에 대하여 보증지원

⇒ 필요시 납품계약 내용 확인을 위해 [별지 2] 납품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권철에 보관

- 다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조선기자재 제작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대상채무

- 대상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운전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 다만, 조선기자재 납품계약 등을 근거로 하여 조선기자재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제작금융*에 한정

* 예시) 조선기자재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원재료 구입비 등

2.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최고보증한도)「신용보증규정」부칙(17) 제2조 및 제3조의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잠정조치에 의함

- 「신용보증규정」제12조의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보증한도 대상보증에서 제외

* 「신용보증규정」 제13조제1항의 같은 기업에 대한 최고보증한도에 해당하는 보증으로 운용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의 최고보증한도 100억원

*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합하여 200억원 한도로 운용

- 「신용보증규정」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한 한도를 모두 충족한 범위에서 운용

1)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제외한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금액"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70억원 이내

2) 위 1)의 보증금액과 신보와 기보의 투자금액을 합하여 100억원 이내

3) 위 2)와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과
신보와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하여 200억원 이내

구분	보증별 최고보증한도	한도	최고보증한도 운용
①	■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금액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 단 ④를 제외한 금액	70억원	① + ② = 100억원 ① + ② + ③ + ④ = 200억원
②	■ 신보와 기보의 투자금액	30억원	
③	■ 신보와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	200억원	
④	■ 본 특례보증 ㉠ 중소기업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200억원)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100억원)	200억원	

<예시1>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금액 5억원, 신보와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기초자산 편입금액 5
억원, 조선기자재 기업 특례보증 40억원인 경우 RG 특례보증 지원한도 : 150억원
<예시2>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금액 30억원, 신보와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기초자산 편입금액 10
억원, 조선기자재 기업 특례보증 70억원인 경우 RG 특례보증 지원한도 : 90억원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신용보증규정」부칙(17) 제3조의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잠정
조치에 의함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은「신용보증규정」제13
조제3항의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보증금액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를 차등 운용

■ KRS-C 및 KRS-S(업력 3년 초과)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급

미래성장성등급	최고보증한도
1. K1등급 ~ K5등급	<u>200억원</u>
2. K6등급 ~ K8등급	<u>150억원</u>
3. K9등급 ~ K13등급	<u>120억원</u>

■ KRS-S(업력 3년 이하)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급

미래성장성등급	최고보증한도
■ K1등급 ~ K13등급	<u>120억원</u>

○ (납품계약당 보증한도) 조선기자재 납품계약 금액에서 선금금 및 기회수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보증심사 운용요령」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한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
여 산출

- 추정매출액의 1/2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 당기 매출액의 1/2

3. 보증심사방법 등

□ 심사 방법

- 「보증심사 운용요령」제29조부터 제3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표준심사** 적용
 - 심사기준 보증금액*이 5억원 이하(미래성장기업군 I 군) 또는 3억원 이하(미래성장기업군 II ~ IV 군)인 경우에는 일반심사(비창업용/창업용) 적용 가능
 - * 심사요령 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증심사 운용요령」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본 특례보증에 한하여 일반심사 및 표준심사에 적용하는 '신용도 취약기업' 요건 일부 완화하여 운용

구 분	일반보증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일반심사 체크리스트 표준심사 체크리스트 (신용도취약)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고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의 적자가 증가한 기업	■ 최근 3개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고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의 적자가 증가한 기업

※ '일반심사 체크리스트(창업용)'은 해당사항 없음

□ 전결권

- 「보증심사 운용요령」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우대 사항

□ 보증비율

- 「부분보증 운용기준」에 불구하고 **90% 적용**
 - 다만, 다른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90%를 초과하여 운용 가능

□ 보증료율

- 「보증료 등 운용기준」에 따라 산출된 미래성장성등급별 보증료율에서 **0.3%p 차감하여 운용**하되, 차감 후 보증료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적용

5. 보증 취급 방법

□ 보증방법 및 거래방법

- (보증방법) 개별보증
- (거래방법) 일반거래 [한도거래 불가]

□ 보증기한

- 금차 보증신청 관련 조선기자재 납품계약서 등의 **납품기일로부터 180일 이내**
 - 본 보증은 특정 조선기자재 납품계약서 등에 근거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보증기한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납품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갱신보증 또는 기한연장 취급 가능하고 경영환경 악화등 사정변경으로 보증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2년까지 연장가능

□ 제출자료

- 「조사자료 등 운용기준」에 따르되, 금차 보증신청 관련 **조선기자재** 납품계약서 등 계약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본** 및 [별지 1] **확약서**를 추가로 수집하여 납품계약 내용을 파악

□ 전산관리 등

- 보증신청 내용 입력 시 '보증상담·접수' 화면에서 자금특성 란에 아래의 코드를 입력

구 분	적용코드
■ 조선사 추천	■ 조선기자재 기업 특례보증(조선사)
■ 신보.금융회사 추천	■ 조선기자재 기업 특례보증

- 채권은행은 전자보증신청서에 “본 보증은 조선기자재 기업 특례보증 추천건임”이라고 기재하여 추천

□ 보증 취급 시 유의사항

- **기보증 포함 증액보증으로 취급 불가**하며, 기존보증을 본 특례보증으로 갱신보증 취급 불가
 - 다만, 납품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증액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보증 포함 증액보증으로 취급 가능
- 이미 취급한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관련 납품계약서로 본 특례보증 취급 불가

□ 연대보증 입보면제

- 본 특례보증은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면제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급
 - 다만, 본 특례보증은 별도로 만기를 운용하고 있어 분할해지 대상 보증에 해당하지 않음

□ 사후관리

- **특별사후관리기록표* 작성**
 - 최초 보증서 발급일이 속한 월의 다음 분기부터 **매 분기별로** 특별관리기업에 준해서 **공정진행률, 매출채권 회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내용을 의견란에 기재
 - * (전산경로) 보증/관리 - 보증고객 - 부실징후알람/사후관리 - 사후관리기록표

VI. 그 밖의 사항

□ 보증취급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조치

- 본 보증 취급과 관련하여 취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급자의 업무상 책임을 면함
- 본 특례보증은 심사요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금융성 운전자금보증'에서 제외
- 본 특례보증 지원 금액은 '신용보증건전도' 평가대상, 장기고액보증 감축 및 일부해지 대상에서 제외
- 본 특례보증 지원 건은 성과평가 시 다음 항목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보증잔액관리, 리스크인수율, 부실관리노력도, 신규보증질적개선노력도*

* 다만, 세부평가항목 중 업무추진노력도, 균형성과관리노력도, 운영리스크모니터링 항목은 현행대로 평가

□ 세부 운용사항의 위임

- 본 보증 운용과 관련하여 보증한도, 심사방법, 전결권 이외의 세부운용 사항에 대한 신설 및 변경은 신용사업부문 담당임원 전결로 처리

VII. 시행일 등

□ 시행일 : '18. 12. 7.

□ 총 지원한도 : 700억원

- 정부 출연금(100억원)을 재원으로 500억원 지원
- 조선사 출연금(4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지원
- * 우선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500억원 지원하고, 향후 조선사 출연 시 200억원 지원 예정

□ 운용시한

○ 총 지원한도 소진 시까지

- 다만, 본건 특례보증에 대한 신보의 보증채무이행으로 보증재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소진시점에서 운용 중단
- * 정부재정 100억원 소진 시 정부재정에 의한 보증지원(500억원) 중단,
조선사 출연금 40억원 소진 시 조선사 출연금에 의한 보증지원(200억원) 중단

확 약 서

신용보증기금 귀중

당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선기자재 제작 납품계약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지원받아 조선기자재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원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 하겠으며, 발주사로부터 납품대금을 회수 즉시 보증금액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보증일자		보증금액		대출금액	
조선기자재 제작 납품계약 내용					
계 약 명					
발 주 사		계약일자			
계약기간		납품예정일자			
조선기자재 납품대금 회수 현황					
계약금액(A)	선급금(B)	기회수금액(C)	잔여 회수예정 금액 (A-B-C)		

년 월 일

기업체명 :

대 표 자 :

(인)

납품계약 확인서

신청기업
「계약명:

의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과 관련하여
」에 대한 납품계약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다 음

구분	확인사항
납품계약일	년 월 일
납품계약서 명칭	
납품계약금액(부가세 제외)	백만원
계약 진위 확인(상대처)	☐ 유선확인 ☐ 현장방문 ☐ 기타 구매기업 면담자 : 구매기업 연락처 :

년 월 일

○○지점 확인자 (인)